

2010년도 제6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10. 12. 28(화) 07:30~09:30

② 회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소식당

③ 출석임원

- 이사장 정형근
- 이사 김동만, 김영배, 김동환, 신현호, 박정희, 이준순, 고경석, 박재민, 소기홍, 한문덕, 배종성, 조국현, 안소영, 장기태

④ 보고사항 및 상정안건

- 제6회 임시이사회 보고사항
 - 2010년 ~ 2011년 건강보험 재정상황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승인현황
 - 2010년도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승인현황
- 제6회 임시이사회 부의안건 심의·의결
 - 의안 1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안 2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변경안
 - 의안 3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4호 :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5호 : 위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6호 :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의안 7호 : 징수이사추천위원회 구성안
- 의안 8호 : 보험료 등 수납위탁기관 계약안
- 의안 9호 :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0호 : 일산병원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1호 : 일산병원 연구소 운영규정 제정안
- 의안 12호 : 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이월안
- 의안 13호 : 일산병원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⑤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자격징수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 1 2010년 ~ 2011년 건강보험 재정상황 보고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승인현황 보고
 - 2010년도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승인현황 보고

① 주요내용

- 2010년 ~ 2011년 건강보험 재정상황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승인현황('09. 3/4분기~'10. 2/4분기)
-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승인현황('10년도)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재정상황에 대해서 예산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바꾸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보고사항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적자를 예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지난 번에 공청회같은 토론회도 있었지만 거기에 나온 각계의 이야기를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공단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재정적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나 ○○○○○에 협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에 ○○○ 이사님께서 지난 달에 말씀하신 사후정산제도 그것도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정부지원 20%중에 16%가 지금 와 있고 사후정산 하면 4%가 더 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토론회에서

○○일보 기자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기업이나 또는 공무원과 같은 직장가입자들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의 합의 없이 5.9%나 올릴 수 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전부 떠맡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단 이사로 오기 전에 저는 한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가 50%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정부지원 비율이 적습니다. 보장성 강화, 노인복지, 노인요양 그런 것 다 좋지만, 정부가 만든 일이므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따라와야 되는데 보장성 강화만 시켜놓으면 공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올려서 받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방안, 어떤 제안사항을 마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장 : ○○○ 이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같이 고통을 나눠서 분담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입자들께서는 적지 않은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내년의 경우 관리운영비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이라던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지만 고통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년 2월까지 ○○○○○, ○○○ 등 정부에서 새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4월달 국회에서는 이 내용이 통과되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사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월수입 없이 재산만 조금 가진 사람도 보험료를 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도 건강 보험료를 내는데 연금 받는 분들은 안 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걸 지난 번 토론회 때 알았어요. 연금받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보험료를 안 받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받아가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제도 마련하실 때에 연금수급자도 보험료 내는 방안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사 : 예. 일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조만간에 실제로 보험료 상한 부분이 24배에서 30배로 올리게 됩니다. 고액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도 조만간에 부담하게 되고요.

○○○ 이사 :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넣어 줍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한테 못 들어가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재산만 조금 있으면 못 들어 갑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사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사 : 그러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것만 상한선을 올려야지요.

○○○ 이사 : 보험료 상한선이 현재 24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최대 24배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30배였습니다. 그 동안은 상한선을 묶어놓고 전체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갭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30배로 해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능력이 있는 분, 지역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보험료를 내시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고요. 아까 연금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월 150만원 받으시든 200만원 받으시든 이 분들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산이나 자동차나 이게 합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받는 분들이 만약에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20만원에서 30만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연금 소득액의 10%에서 15%정도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1단계만 먼저 시행을 하고 단계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만 조금 있어도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이사 : 연금소득도 없는 사람한테는 다 받아 갑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상한선은 소득에 관한

것만 뒤야 될 거 같아요. 재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조금 갖고 있다고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 감당을 못해요.

○○○ 이사 : 지역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의 80%정도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면에는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지역가입자들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저도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바로 소득과 재산으로 양분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체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태생적으로 출발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해결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급여비용 지출을 과거에 포폴리즘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했을 때 자꾸 늘려주고 늘려주고 했습니다만, 이것 한번 늘려주면 해소 못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려주며 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늘리면 향후에 재정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을 해 왔지만 늘려 놓으면 앞으로 5~10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는 말이지요.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피부양자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강남에 3-4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이사 안 가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식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또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렇게 나니까 저희들한테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고충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가면서 수입쪽을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수입확충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은 다른 나라는 건강 보험 하게 되면 병 안 걸리는 사람이 병 걸리는 사람에게 보호해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들 돈을 걸어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상 최고 한계를 정해 놓고 있던 것도 이제는 이것을 헐어서 한달에 몇 백만원 아니라 앞으로는 몇 천만원도 보험료로 내야 될 텐데 글썽 돈 많은 사람들은 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이 제도를 복잡한 가운데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잘못하게 되면 혼란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현재 있는 지출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목소리 큰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만 한편 걱정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장 : ○○○ 이사님, ○○○ 이사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이사님들께서는 이런 실정을 아시고 이 문제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계셨고 보고도 했는데 지출과 수입 이런 모든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 이사님께서 한번 더 ○○○ 이사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 :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아까 태생부터 어려운 과정에서 출발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가 대만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통합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투명을 해졌습니다. 상당 부분 접근을 해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구요. 그런 과정에서 빨리 일원화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 하신 부분들 취약 계층이라던지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배려하고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감사합니다.

2 안건 제1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제1호 안건 주요내용

총괄 : 394,168억원('10) → 424,239억원('11) ... 30,071억원, 7.6% ↑

- 건강보험(일반회계) : 363,381억원('10) → 387,517억원('11) ... 6.6% ↑
- 일산병원(특별회계) : 1,789억원('10) → 1,793억원('11) ... 0.2% ↑
- 장기요양보험 : 28,998억원('10) → 32,494억원('11) ... 12.1% ↑
- 사회보험징수사업 : 0억원('10) → 2,435억원('11) ... 순증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징수통합하면서 예를 들면 ○○○○○에서 이쪽으로 312명이 넘어오고, 또 ○○○○에서 700명 정도가 넘어와서 1000명 정도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한 2천억이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시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 전체 인건비하고 현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료를 고지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이사 : 나름대로 여기서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애당초 우리가 통합고지하게 된 기본정신은 어떻게든지 낭비를 줄이고 한 군데로 몰아서 징수하게 되면 편리하게 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통합의 논리였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312명이 이쪽으로 넘어 오면서 ○○○○공단은 190명을 새로 뽑아야 되요. 개인정보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하고 협의도 하는 거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12명을 줄였는데, 내용상으로는 또 다시 190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통합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비용이 제대로 줄어들면서 통합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이사장 : 이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 낭비적인 요소를 줄였습니다만 ○○○○공단의 경우 이사님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고지하던 것을 월별 고지로 고지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월별로 고지하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조정도 해서 늘어난 인원인데, 이 기회에 ○○○○공단도 ○○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통합하면서도 효율화를 기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일부지사는 2급 지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급 지사로 되는데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용을 다운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근본정신은 인원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이중삼중 비용 줄이기 때문에 이점을 아주 명심해서 앞으로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사 : 이사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고, 정책적인 문제는 ○○○와 ○○○에서 알아서 고민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징수통합하면서 저쪽에서는 일단

성과급이라던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게 되니까 성과급이 늘어가고 ○○○○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연말 성과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이 평균 개념으로 다 와서 계산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15%까지는 받고 나머지는 향후 몇 년간 유예하겠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할 정도로 ○○○○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사 : 저도 ○○○ 이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제 보고 받으면서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통합의 목적에 달성이 된 게 맞느냐 이 방안이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고, 그 통합을 할 때 제가 조금 관여했었는데, 몇 년전 통합 논의될 때 그 통합 기관들이 통합하는 것을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되는지가 아직도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인건비, 정부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에 예산 편성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겠지만 인건비 5.5% 인상 중에 성과급을 2%, 2%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 방안인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성과급 주는 방안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 사 :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추가적으로도 편성한 그 것도 일부 있지만 원래 직원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사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1호 안건 원안의결

3 안건 제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변경안

① 제2호 안건 주요내용

※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단의 목적에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사항 추가
-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2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2호 안건 원안의결

4 안건 제3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건 제4호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건 제5호 위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제3호 안건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반영

- 성과연봉 도입과 차등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
- 직무급 도입에 따른 직무연봉 차등 기준 마련
- '10년도 자연증가분을 반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 연봉한계액 변경

② 제4호 안건 주요내용

※ 4대 사회보험관련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편성 지침 등 반영

-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에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추가
-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는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구분
- 유형자산 처분결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취득가액 5천만원이상 → 취득가액 1억원이상
- 정관 제66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시기 (11월 이후)를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기한 삭제
 -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⑤ 제5호 안건 주요내용

※ 징수통합에 따른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 보험료 납부 집단거부 시 위기수습 실무책임자를 현행 자격징수 실장에서 납부지원실장으로 변경

⑥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3호 내지 5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⑦ 논의 결론

- 제3호 안건 원안의결
- 제4호 안건 원안의결
- 제5호 안건 원안의결

5 안건 제6호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안건 제7호 징수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안

① 제6호 안건 주요내용

- ※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사항 규정 제정
- 징수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위원장(이사장), 위원(이사 전원)
- 위원회는 징수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정함

② 제7호 안건 주요내용

- ※ 징수이사의 추천을 위하여 징수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징수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이사장, 이사 전원

⑥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6호 내지 7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 제6호 안건 원안의결
- 제7호 안건 원안의결

6 안건 제8호 보험료 등 수납위탁기관 계약안

① 제8호 안건 주요내용

- ※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보험료 등 수납방법 다양화
- 신용카드 수납계약 ... 7개사 : 국민, 삼성, 신한, 롯데, 외환, 비씨, 현대
 - 수납대상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 수납방법 : 지사 창구수납, 카드 자동이체, 홈페이지 카드수납
 - 카드사별 수납 수수료를 공단 수준으로 대폭 인하
 - ※ 현대 1.50%, 외환 1.65%, 국민·삼성·신한·롯데·비씨 1.75%

- 신규 수납기관 계약

- 수납대상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 수납방법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수납, 홈페이지 계좌이체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8호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8호 안전 원안의결

7 안전 제9호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전 제10호 일산병원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전 제11호 일산병원 연구소 운영규정 제정안

① 제9호 안전 주요내용

- ※ 간부직(3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등
- 가계지원비 등 고정급 제수당 등을 기본연봉에 반영
- 일반직 1급내지 3급직원의 연봉한계액 규정 신설
- 기본연봉은 인건비 인상분의 총액 범위내에서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② 제10호 안전 주요내용

- ※ 직제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 등
- 규정운영 목적에 사무행정 '간소화' 추가
- 보존기간 변경 : 20년 → 30년
- 관리부원장 → 행정부원장

③ 제11호 안전 주요내용

- ※ '10.7.5일개소한 일산병원 연구소의 운영의 필요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 연구소의 기능 : 공단과 연계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적정성 연구 등
- 연구소 운영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 병원 직원 또는 외부인사 임명·위촉

④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의안 9호내지 11호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간부직 3급이상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조항 개정 가운데 네 번째 보면, 10호 통상임금 되어 있지요. 기본 연봉의 16분의 1로 해서 통상 임금이 월봉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가 아니고 이게 67%가 나오는데요.

간 사 : 숫자는 전부 계산해서 맞춘 금액입니다.

○○○ 이사 :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16분의 1이 1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60%가 아니고 67%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간 사 : 현재의 기본연봉의 16분의 1로 지급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수를 재산정 하면서 기존에 수당지급하는 부분을 다시 연봉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니까 67%에서 60%로 줄었습니다.

○○○ 이사 : 그렇게 자동으로 연봉이 줄어들면 67%가 되어야 정상인데...

간 사 : 기본연봉이 단순히 16분의 1에서 나눈 부분이 아니고 성과 연봉제하면서 연봉에다 연봉외의 수당지급하는 부분을 연봉에 포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연구수당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 이사 : 알겠습니다.

○○○ 이사 : 232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병원 연구소 운영규정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연구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조(운영위원회) 4항 단서조항을 보면, '단, 임상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는 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처럼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와 임상실험심의위원회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이 임상실험하고 싶고 또 임상실험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확인해봤더니 10%에서 15%정도 관리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실험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이게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처럼 두는 오해 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일산병원은 모든 병원의 롤모델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제정하면 다른 병원들도 원용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7조에 보면 임상실험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8조 4항 단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와 임상실험심의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간 사 :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한쪽 부분 즉 8조 4항 단서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이사 : 그러면 4항에서 얘기하는 연구심의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임상실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고 하면 삭제해도 27조 규정이 있으니 좋은데 8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산하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임상실험심의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요?

간 사 : 단서 조항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 단서조항만 삭제하면, 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하면 3호 내지 5호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 과제 선정 및 위탁연구, 연구계획 및 연구비, 연구결과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위원회가 연구심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하는데 그러면 임상실험에 관해서는 별도위원회를 두면 별도위원회하고 연구심의위원회하고 관계설정을 뭔가 해주어야 됩니다.

일산병원 ○○○○팀장 : 일산병원 ○○○○팀장입니다. 4항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소의 일반연구를 심의하는 기구이고요. 임상실험심의위원회(IRB)는 법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사장 : ○○○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

○○○ 이사 : 앞에 예산하고 같이 연관해서 여쭙 봐야 되는데 일산 병원은 올해도 견학을 시켜줘서 잘 다녀왔거든요. 일산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수규정도 개정하고 연구소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0.2% 밖에 안 됩니다. 4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 자체적으로 수입이 따로 있어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에 보면 일산병원은 0.2%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간 사 : 일단 예산은 전부 다 고려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봅니다.

이사장 : 별도의 수입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사 : 심사평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년 대비해서 관리 운영비가 마이너스로 편성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마이너스로 편성했거든요. 다만 일산 병원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되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사 : 거의 동결 수준이네요.

○○○ 이사 : 그렇지요.

○○○ 이사 :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단서조항만 삭제 해서 수정의결할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 보다는 그 단서 조항만 삭제해서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9호 안건 원안의결

제10호 안건 원안의결

제11호 안건 수정의결

8 안건 제12호 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이월안

안건 제13호 일산병원 고정자산 불용결정및 처분안

① 제12호 안전 주요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용역결과 사업기간 16개월('10.6.22~'10.22) 소요

－ 이월금액 : 2,496,690천원 ... 계약금액 : 8,191,773천원, 집행금액 : 5,695,083천원

① 제13호 안전 주요내용

※ 내용연한 경과, 기능 저하 자기공명영상촬영기를 불용처분

－ 불용장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취득금액	감가상각액	잔존가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1	2,131,170,380	2,131,169,380	1,000	2000.3.3.	6년

② 참석자 발언 요지

이사장 : 이런 경우에 7,600만원 정도의 잔존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사서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안전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는 몰라도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일산병원(○○○○팀장) :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게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특정부분 검사때만 사용합니다.

○○○ 이사 : 여기 내용 연수가 6년인데요. 취득한 날짜는 2000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간 사 : 10년 동안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 이사 : 내용 연수는 6년인데 4년 더 썼다는 얘기인데요.

이사장 :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쓴 모양인데, 문제가 있어요. 6년인데 4년을 더 쓴것은 일산병원의 장비 등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장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연한이 넘은 게 있는지.

이사장 : 다른의견 없습니까?

이사들 : 없습니다.

③ 논의 결론

제12호 안전 원안의결

제13호 안전 원안의결